



제 429국회 (정기회)
제 9차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원장 등 상임위원 겸직금지 의무 규정 마련 >
■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18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원장 등 상임위원 겸직금지 의무 규정 마련	3
2. 개정안 부칙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준 의원 등 18인

2. 발 의 일 : 2025. 9. 26.

3. 회 부 일 : 2025. 9.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의 겸직문제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소속 기관장’은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의 지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제청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위원장 등 상임위원 겸직금지 의무 규정 마련(안 제9조 제2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생략)	제9조(겸직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u>
<u>②·③</u> (생략)	<u>③·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되는데, 상임위원은 법 제3조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바¹⁾, 이들은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정무직 공

1)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무원을 포함한 공무원²⁾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³⁾.

□ 그러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⁴⁾」은 공무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⁵⁾,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 한다)」에서는 상임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중 임명되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2)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위임하고 있으나 임용제청 절차나 제청권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⁶⁾.

□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임명제청권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공무원법」상 겸직허가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상임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상임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원을 포함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직⁷⁾을 겸직할 수 없음.

□ 그러나 개정안의 경우 임명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제9조제1항과 충돌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2항(개정안)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 또한, 개정안의 경우 상임위원이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상임위원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⁸⁾, ‘위촉’의 경우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로 보이는바⁹⁾, 개정안에서 ‘위촉권자’는 삭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며, 법 제3조제1항에서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정합성을 위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8)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촉이 아닌 임명되고 있음.

9)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296p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개정안 시행 당시 겸직 중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하여 겸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나, 개정안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임명권자 등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겸직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나. 검토의견

- 먼저, 개정안은 겸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10)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 입법례의 경우 옴부즈만이 검직할 수 없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시행령의 내용¹¹⁾을 법에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시¹²⁾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였는바, 개정안의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동 개정안은 과거에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보임.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로써 구법에 따른 지위에 대하여 과도적 조치를 하는 등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¹³⁾.
- 경과조치란 법률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구법에 대해 형성된 신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1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9조(검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검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방산업체등의 임·직원
-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807781)이 2010년 3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방위사업법」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⑧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검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임직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45p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구법의 효력을 시행일 이후까지 미치도록 하거나 구법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가 신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규정한 부칙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부칙은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구법 질서에 대한 수범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임¹⁴⁾.

문 의 처
02)6788-5186

14)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861p